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9
----------	-----

2019. 4. 22. (월)  
교 육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황규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9년 4월 9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4월 22일

(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황규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,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
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 
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
- 기본계획 수립 사항 내용 추가(안 제4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용어변경(안 제7조)  
(현행) 간이수영시설  
(변경) 이동식수영장
-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-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- 현재 충북은 2016년 초등 4~6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초등 2학년까지 운영되며, 2020년에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기반시설과 인력부족, 체계화되지 않은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, 이동식수영장을 포함 한 생존수영교육 시설관리 체계 등이 보완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,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-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명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”로 변경한 것은 본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더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
-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내용에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과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고, 안 제5조에 매년 생존수영교육 시설과 각급 학교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은 생존수영 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·감독을 강화시켜 내실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생존수영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와 생존수영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안 제11조의 신설은 일반 수영교육과 구분되는 생존수영교육의 특징과 전문성을 높이고, 부족한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
- 종합적으로, 본 조례안은 개정의 취지와 조문 구성 및 내용면에서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,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 
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존수영교육”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생존수영 교육과정”이란 생존수영교육 수업 시수, 수업 시수별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등을 체계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생존수영교육과정
3.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
4.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
5.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·연수
6.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7.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실태조사)**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북도 내 수영장 시설 실태 및 각급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생존수영교육 활성화)** ①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)**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원 연수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안전조치의 의무)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생존수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예산지원)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 확보와 예산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 계 법 령

## □ 학교체육진흥법

제3조(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<개정 2013.3.23.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,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,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3.23.>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,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<개정 2013.3.23.>

제15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사회와 협력)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17.>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17.>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 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유아“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“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##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 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 
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흥” 을 “지원” 로 변경하는 것으로,  
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
- 기존 총사업비 : 3,613,400천원
  - 교육 운영비 : 3,613,400천원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 
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
안의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